

인도네시아 西 마두라광구 석유개발사업 지원대책 처리방안

- 동력자원부 -

1. 경위

- 1991. 12. 2
인도네시아 西 마두라광구 석유개발사업대책 관계부처 합의(경제기획원, 재무부, 동자부)
- 1991. 12. 7
이 사업 지원대책을 유개공에 통보
- 이 대책에 대한 코데코의 동의 및 인도네시아측의 양해와 이 대책의 실시를 위한 모든 법률적 조치가 '91. 12. 28까지 완료되지 못하면 이 대책은 시행하지 아니함.
- 1991. 12. 17
油開公은 코데코가 1개월간의 검토기간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
- 1991. 12. 18
모든 조치가 '91. 12. 28까지 완료되지 못하면 회계년도 변경등의 사유로 이 대책을 시행할 수 없음을 油開公에 통보
- 1991. 12. 19~20
油開公 사장 인도네시아출장, 페르타미나 총재, 광업에너지부 장관 및 석유가스청장 면담
- 인도네시아측 반응
 - 가스田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함.
 - 한국정부가 1,930만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환영하는 바임.
 - 다만 지원조건은 한국측 내부문제이며, 결과를 기다리겠음.
- 1991. 12. 26
油開公은 코데코가 지원조건을 수락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

2. 코데코 입장

- 동자부와 油開公에서는 본건을 금년내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 당사자인 당사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임.
- 油開公은 '86. 11. 21 체결된 약정서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바, 동 약정서의 이행여부에 대한 결산, 이 약정서에 대한 정리절차가 계약당사자간의

상호 합의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함.

- 추가적인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당사가 수용치 못할 각종 조건이 일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.

3. 처리방안

- 가. 코데코가 지원조건 거부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시행하지 아니함.
- 나. 油開公은 '91. 12. 29 이후 이 사업에 대한 경영관리 철수
 - 콘소시엄 계약서 제14조(계약의 해지)의 규정에 의거, 油開公은 계약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약의 해지를 코데코에 통고할 수 있고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함.
 - 다. 경영관리 철수 이후에도 일단 油開公의 참여지분은 유지하되 油開公이 69백 만달러에 달하는 지급보증을 한 점을 감안, 지분에 따른 신규자금 부담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.
 - 라. '91. 12말 기준 14백만달러로 예상되는 외상채무의 변제의무와 관련, 코데코는 油開公의 경영관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이에 응할 수 없음.
 - 콘소시엄 계약서 제9조(면책)의 규정에 의거, 油開公은 사업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데코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.
 - 외상채무의 명의는 모두 코데코로 되어 있으며, 다만 油開公이 경영관리를 해온 것은 사실이나 油開公의 변제 책임 여부는 소송을 거쳐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음.
 - 마. 油開公의 지분철수, 석유사업기금 기 지원분 손실 처리, 해외자원개발사업 혀가 취소등 최종적인 사업정리 조치는 향후 사업진행 경과 및 인도네시아측의 반응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치
 - 바. 코데코가 지원조건 거부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없음과 油開公이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이 사업에 대한 경영관리를 철수함을 페르타미나에 통보